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1호	700	800	900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1)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2)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호			
		300	350	400
		250	300	350
		200	250	300
		150	200	250
		100	150	200
		100	150	200
다.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51조제2항제2호			
		130	260	390
		100	200	300
		80	160	240
		50	100	150
		30	60	90
라.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51조제2항제3호			
		130	260	390
		100	200	300
		80	160	240
		50	100	150
		30	60	90
마.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1)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법 제51조제1항제2호			
		300	600	900
		250	500	750
		200	400	6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300	4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200	300
2)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 하거나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바.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1조제 2항제4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사.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51조제 2항제5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아.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 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 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경우	법 제51조제 2항제6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자.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51조제 2항제7호			
		130	260	390
		100	200	300
		80	160	240
		50	100	150
		30	60	90
차.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관련 정보 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51조제 2항제8호			
		130	260	390
		100	200	300
		80	160	240
		50	100	150
		30	60	90
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1)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 목적으로 수 입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2)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 목적으로 진 열 또는 보관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법 제51조제 1항제3호			
		300	600	900
		250	500	750
		200	400	600
		150	300	450
		100	200	300
		130	260	390
		100	200	300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타.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51조제2항제9호			
		150	170	200
		130	150	180
		100	120	150
		80	100	130
		50	70	100
파.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51조제2항제10호			
		150	170	200
		130	150	180
		100	120	150
		80	100	130
		50	70	100
하.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2)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법 제51조제2항제11호			
		300	350	400
		250	300	350
		200	250	300
		150	200	250
		100	150	200
		250	300	350
		200	25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50	200	25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	150	20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100	150
거.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둔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2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너.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3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더.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4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러.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5호			
1)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350	4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300	3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250	3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200	2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150	200
2)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 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며.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 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 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경우	법 제51조제 2항제16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버.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 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 용한 경우	법 제51조제 2항제17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서.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 활용품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 2항제18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어.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51조제2항제19호	130 100 80 50 30	260 200 160 100 60	390 300 240 150 90
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51조제1항제4호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처.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51조제2항제20호	300 250 200 150 100	350 300 250 200 150	400 350 300 250 200

커. 법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51조제2항제20호의2	150	170	200
터. 법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51조제2항제20호의3	130	260	390
퍼. 법 제3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51조제2항제20호의4	130	260	390
허. 법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	300	600	900
고.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5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500	550	6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450	500	55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00	450	50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350	400	4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0	350	400
노.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51조제1항제6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500	550	6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450	500	55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00	450	50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350	400	4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0	350	400
도.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제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표시한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51조제2항제21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150	18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130	16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00	13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70	10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50	80
로.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한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법 제51조제2항제22호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50	280	3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00	230	26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50	180	21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	130	16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80	110
모.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7호	400	500	600
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	500	600	700